

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

기업지배구조 현황

제정 2022-05-09



목차

전문

제1장 주주

- 제1조 주주의 권리
-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
- 제3조 주주의 책임

제2장 이사회

- 제4조 이사회 기능
- 제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
- 제6조 이사의 자격
- 제7조 사외이사
- 제8조 이사회 운영
- 제9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
- 제10조 평가 및 보상

제3장 감사기구

- 제11조 감사위원회
- 제12조 외부감사인

제4장 이해관계자

- 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

제5장 공시

- 제14조 공시

전문

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(이하 “회사”)는 기술력 기반의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시하는 “The Future Driving Innovator”로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Top Tier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이와 더불어,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의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.

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 증진,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이 상상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
제1장 주주

제1조(주주의 권리)

-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,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,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합병·정관의 변경·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.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,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조(주주의 공정한 대우)
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한다. 단,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. 또한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한다.
- ③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,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관리한다.

제3조(주주의 책임)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장 이사회

제4조(이사회 기능)

- 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, 관련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- ②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전략과 목표를 승인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는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관리·감독한다.
- ④ 이사회는 법령, 정관,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)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며,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,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식·경험·능력·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제6조(이사의 자격)

-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, 모범적인 윤리의식과

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,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.

-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, 혁신적인 사고방식, 실용적 지식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

제7조(사외이사)

- ①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산업, 금융, 학계, 법조계, 회계, 경영 등 해당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하며, 이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조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·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8조(이사회 운영)

-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,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.
-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.
-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- 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(음성 또는 화상 및 음성)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의 의무 및 책임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.
- ② 이사는 직무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③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- ④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이사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처하고,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0조(평가 및 보상)

- ① 이사회는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,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.

제3장 감사기구

제11조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인 이상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,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주요 활동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,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감사위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2조(외부감사인)

-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,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13조(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)

- ① 회사는 고객과 직원, 주주, 채권자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
제5장 공시

제14조(공시)

-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. 또한 법적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 또한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